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3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권향엽·주철현·박희승

이기헌 • 임미애 • 정진욱

박지원 • 이광희 • 민형배

문금주 • 민병덕 • 윤준병

박용갑・김기표・정동영

소병훈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장, 권한 대행,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의 출석권 등을 명시하여 국가의 중대사 전반이 논의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회의록,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, 이는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무회의의 회의록,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4항신설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1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회의록,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국무회의) ① ~ ③ (생	제12조(국무회의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
	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
	무회의의 회의록, 속기록 또는
	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
	을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
	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